

國際通商法の 研究方向에 관한 一考察

(A Review on the Coverage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ial Law)

徐 正 斗*

- I. 序 言
- II. 國際通商法の 意義와 體系
 - 1. 國際通商法の 定義
 - 2. 國際通商法の 研究對象
 - 3. 國際通商法の 構成體系
- III. 通商法으로서의 國際經濟法 研究
 - 1. 國際經濟法の 意義
 - 2. 國際經濟法の 法源
 - 3. 國際經濟法の 他法과의 關係
- IV. 通商法으로서의 國際商事法 研究
 - 1. 國際商事法の 意義
 - 2. 國際商事法の 構成體系
 - 3. 國際商事法の 研究範圍
- V. 結 言

I. 序 言

새로운 21세기의 출발을 눈앞에 두고 최근 對外通商環境은 나날이 변화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각국의 保護貿易主義가 확대되면서 통상마찰이 빈발하고, EU와 NAFTA, APEC 등과 같은 거대한 지역경제 블록의 형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 全北産業大學校 貿易學科 副教授, 經濟學博士.

이러한 시기에 1995년 1월 1일 WTO의 출범은 世界經濟史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으며, 이를 계기로 최근에는 貿易과 연계하여 각국의 勞動·環境·技術·競爭政策 등의 問題에 관한 새로운 國際規範을 마련하자는 논의로까지 발전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교역국가 중의 하나로서 국제사회에 걸맞는 역할 수행이 요구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EU 등 선진국들로부터 무역제소가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준비자세는 아직도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通商問題에 대한 專門家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급변하는 國際通商環境에 시의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는 우선 國際通商規範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통상외교를 펴나가야 할 것이며, 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각 분야의 通商專門家들을 양성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國際通商法の 연구방향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國際通商法은 기본적으로 國際貿易秩序의 유지를 위한 국제규범을 정하여 효율적인 貿易去來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각종 상사분쟁의 해소 내지는 경감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논자는 국내외의 여러 분야에 산재되어 있는 先行研究資料와 拙著인 「國際通商法」(三英社, 1996)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학연구의 입장보다는 商學研究의 입장에서 국제통상의 업무 현실에 맞는 國際通商法の 基本概念과 研究力向에 관하여 작은 意見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國際通商法の 意義와 體系

근래 우리 주변에서는 貿易이라는 말 대신에 “通商”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심지어 정부의 행정부서도 종래의 商工資源部를 “通商産業部”(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로 개칭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貿易이나 通商이라는 두 어휘의 의미는 전혀 차이가 없다. 다만 전자는 중국식의 표현을, 그리고 후자는 일본식의 표현을 각각 빌어 온 것일 뿐이다. 이들의 의미가 서로 같다는 것은 영어의 “trade”에 대한 어원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즉,

“trade”라는 말은 어떤 지나간 자국이나 항로를 지칭하는 “track,” 또는 무엇을 따라간다는 뜻의 “tread” 등에서 유래된 것으로서¹⁾ 어떤 길이나 항로를 따라가서 물건을 교환하는 이른바 “通商”의 모든 행위, 즉 오늘날의 貿易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 國際通商法の 定義

國際通商法(law of international trade and commerce)의 概念에 대하여는 아직 학자 또는 국가에 따라 그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이 일치하지 아니한 부분이 많이 있으며, 앞으로도 각국의 정책적인 입장과 학자들의 見解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의 시각차는 계속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새로이 인식되고 있는 國際通商이라는 말 자체는 바로 國際貿易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國際通商法도 의미상으로는 國際貿易法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이다.

國際通商法은 앞서 언급한 대로 기본적으로는 國際貿易의 秩序維持와 국제 규범을 정하여 효율적인 貿易去來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이를 둘러싼 각종 商事紛爭의 해소 내지는 경감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國際通商法이라 함은 국제통상의 經濟法的인 이념과 규제뿐만 아니라 貿易去來의 전반적인 진행과정에 걸쳐 規範化되어 있는 모든 國際法規를 지칭하는 것이다.²⁾ 심지어 1966년 유엔에 설립된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국제무역법위원회)은 그 설립보고서를 통하여 국제무역(통상)법을 정의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국가들이 관련하는 私法性的 상사관계를 규율하는 법 체계”(the body of rules governing commercial relationships of a private law nature involving different countries)라고까지 규정하고 있다.³⁾ 이는 國際經濟法만

1) 朴壽伊, 國際貿易論, 博英社, 1980, pp.21~22.

2) 미국의 John H. Jackson(미시간대)·William J. Davey(일리노이대) 교수 등은 國際通商法(law of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을 세 분야로 나누고 있다. 즉, 첫째로는 양국간의 國際商事法(private law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분야이고, 둘째로는 각국의 政府規制法(national governmental regulation) 분야이고, 마지막으로 國際經濟法(law of international economic institutions) 분야가 그것이다(Legal Problems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West Publishing Co., 1986, pp.4~5)

3) 이 정의는 유엔 사무총장이 1966년 유엔 총회에 제출한 UNCITRAL 설립보고서 중에

이 國際通商法인 양으로 오인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미국의 대표적인 通商法學者인 Ralph H. Folsom(샌디에이고人), Michael W. Gordon(플로리다人), John A. Spanogle(조지워싱턴人) 교수 등은 1995년에 「國際通商論」(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3rd ed., West Publishing Co.)을 공동집필하면서 그 내용으로는 ① 세계사회에서의 通商行爲(통상이나 고립이나, 행위의 주체, 국제통상의 형태), ② 國際物品交易(국제물품거래계약, 국제물품거래결제), ③ 國際交易의 規制(관세와 비관세장벽, 수입경쟁에 대한 보호, 수출), ④ 技術의 移轉(라이선싱, 침해 및 지적재산권), 海外投資(해외투자의 설치, 국유화), ⑤ 유럽共同體, ⑥ 國際紛爭解決 등을 다루고 있다.¹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하여 볼 때, 國際通商法이란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정부간 또는 정부와 개인간이나 또는 개인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자본과 노동, 기술투자 및 기타 지적재산권의 이전 등에 관련하여 규율하는 모든 國際公法 내지는 國際私法”이라고 그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국제통상은 각국의 정부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는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하는 정부와 기업간 또는 거래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國際通商法の 범위는 각국의 교역증진을 위한 국제경제관계 등을 규율하는 國際經濟法에서부터 수출입기업의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貿易關聯契約과 상사분쟁의 해결 등을 규율하는 國際商事法까지를 포괄하여야 한다.

그러면 國際通商法은 구체적으로 國際經濟法이나 國際商事法 또는 國際去來法, 국제무역법 등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겠는가.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명칭들의 어느 법률도 각각 차별화된 독자적인 영역을 갖고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國際通商法을 이들 유사개념의 법률과 비교하여 논하는 그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國際通商法の 합리적인 연구범위와 대상을 정한다는 의미에서 국내외 학자들의 여러 견해와 선행연구의 추이를 바탕으로 國際通商法과 기타 類似法을 비교하여 개념상의 구분을 해 두고자 한다.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소위 國際貿易法の 개념을 정의할 때 가장 널리 인용되고 있다 (UNCITRAL Yearbook, Vol. 1, 1968~1970, p.20).

4) 벨기에의 Hans Van Houtte 교수(로이벤人)는 그의 저서를 통하여 “國際通商法이란 국가간의 通商去來 및 이에 수반되는 金融關係 등에 관한 법적 규범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Sweet & Maxwell, 1995, p.1).

(1) 國際經濟法과의 關係

國際經濟法(international economic law)은 국제기구나 어느 국가의 정부간 또는 정부와 개인간에 있어서의 國際經濟關係를 규율하는 각종 규범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이는 각국에 속하여 있는 기업이나 개인간의 사적인 거래규범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경제법은 私法的인 이미지보다는 오히려 公法的인 이미지에 더 가까운 國際法の 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⁵⁾ 이에 비하여 國際通商法은 그 주체가 국제기구나 각국의 政府뿐만 아니라 어느 기업이나 개인이 될 수도 있으며, 또 이들 사이의 私的인 거래규범까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국제경제법이 일반적인 국제경제관계만을 규율하는 상위개념의 법률이라면, 國際通商法은 무역에 관련된 國際經濟關係와 이에 따른 國際商事關係를 모두 다루는 실천적인 개념으로서의 법률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2) 國際商事法 또는 國際去來法과의 關係

國際商事法(international commercial law)은 국제경제관계 중에서 국제기구나 어느 국가의 정부간 또는 정부와 개인간의 공법적인 법률관계를 제외한 오로지 兩去來의 당사자인 기업이나 개인간의 私法關係만을 규율하는 법률을 말한다. 여기에는 국제상사와 관련된 당사자들 사이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買賣契約法, 換去來契約法, 國際運送法, 海上保險法 그리고 商事紛爭解決의 절차법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상사법은 아래의 國際去來法の 개념을 포괄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또 國際去來法(international transaction law)은 物品이라는 유통재의 수출입무역에 관한 법률로서, 국가간에 상호 무역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국제물품대매, 교환, 증여 등 물품양도계약에 의한 實物去來가 주된 대상이 된다. 즉, 국제거래법은 국가간의 실물거래당사자들 사이에 所有權의 이진을 위한 物品 賣買法이 주된 분야를 이룬다. 이러한 법률의 연구는 주로 미국과 영국에서 이루어

5) 張季相, 國際經濟法, 恆英社, 1985, p.1, 李相潤, 國際經濟法, 中央經濟社, 1995, p.43. 단지 徐憲齊 교수는 國際經濟法을 더 이상 國際法の 좁은 테두리 안에 묶어둘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國際經濟法, 栗谷出版社, 1996, p.39)

어지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범위나 내용은 일치하지 않지만, 대체로 國際去來法은 국제거래의 당사자인 個人을 주체로 하여 그 개인이 상대방과 국제거래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당면하는 私人的 法律關係를 규율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國際通商法은 국제상사와 관련된 당사자들 사이의 실천적인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이에 앞서 국제경제관계를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나 어느 국가의 정부간 또는 정부와 개인간의 公法的인 法律關係까지도 상당한 부분으로 커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즉, 國際通商法은 국제거래의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서비스, 資本과 技術 및 기타 知的財產權의 국제적인 이동을 비롯한 국제경제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國際去來法과 구별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國際通商法은 국제거래법과 같은 私法的인 분야뿐만 아니라 公法的인 분야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나 심지어 어떤 종류의 國際通商法規는 그 효력이 國家的인 차원에서 발생하지만 내용이 있어서 私人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公法과 私法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2. 國際通商法の 研究對象

國際通商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國際貿易의 秩序를 유지하고 국제규범을 정하여 효율적인 貿易去來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또 이를 둘러싼 각종 상사분쟁의 해소 내지는 경감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國際通商法の의 研究對象은 국제통상을 수행해 나가는 主體일 수도 있고 이러한 통상거래의 대상물인 客體일 수도 있다. 예컨대 WTO와 같은 통상주체의 규범,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같은 객체의 수출입규제 등이 國際通商法の의 研究對象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 國際通商法の 主體的 對象

國際通商法の의 主體에는 크게 國際機構, 國家나 政府, 소기업이나 個人 등의 형태가 있을 수 있다.⁶⁾ 첫째,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國際機構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이다. 예컨대 세계의 대다수 국가가 참가하고 있는 WTO는 國際通

商에 관한 규범을 주도해 나가는 중요한 국제기구이며, 또 IMF는 그 동안 國際收支의 균형과 通貨安定을 추구해 온 국제기구이고, 최근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되고 있는 地域經濟的 國際機構로는 EU, NAFTA, ASEAN 등이 있으며, 나아가서 OECD와 같은 선진국 중심의 國際協力機構 등은 모두 國際通商法の 연구대상이 되는 주체이다.

둘째, 國際通商法은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어느 國家에 의하여 강행법규로 제정한 통상관계의 國內法도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 어느 국가나 정부가 상업적 행위를 할 때 이는 國際通商法の 주체로서 규제의 대상이 된다. 즉, 국가가 公法의 주체로서 행하는 주권적 행위는 國際通商法の 대상이 되지 않지만, 만약 특정국가의 政府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商業的 行爲를 할 경우 이는 國際通商法の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예컨대 WTO 협정에서도 國營貿易, 즉 국가단위로 무역을 수행하거나, 또는 국가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조직을 통하여 무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가도 國際通商法の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셋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企業이나 個人은 國際通商法の 주체로서 이러한 법률의 대상이 된다. 기업이나 개인은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투자 또는 지적재산권의 이전 등 國際貿易業務를 직접 수행하는 주체이다. 따라서 企業이나 個人의 商行爲는 國際通商法の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국제통상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공법적인 주체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私法的인 주체일 뿐이다.

(2) 國際通商法の 客體的 對象

국제통상의 객체에는 商品과 서비스, 資本과 勞動 그리고 이에 따른 國際收支나 환율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國際通商法の 연구대상이 된다. 첫째, 國際通商法の 가장 기본이 되는 객체는 유형새인 商品이다. 따라서 國際通商法이 추구하는 최대의 규율대상도 商品에 대한 국제교역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다. 예컨대 WTO 협정의 기본골격도 전통적인 工產品과 農産物에 대하여 貿易自由化를 추구하고 있다. 즉, 이는 각국의 공산물과 농산물 시장의 수입개

6) Igraz Seidl-Hohenveldern. International Economic Law. Martinus Nijhoff Publishers, Netherlands, 1989, p.13

방을 추진하고, 공산품이나 농산물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농업보조금과 같은 非關稅障壁은 금지하며 오직 관세수단에만 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산품과 농산물의 공정한 교역을 위한 反덤핑關稅 및 相計關稅, 수입의 급증에 따른 국내산업피해구제를 위한 緊急輸入制限措置(safeguards)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무역규범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근리에 와서 선진국이 주축이 되어 國際通商法의 대상으로 부각된 분야가 소위 서비스, 貿易關聯投資 및 知的財産權의 이전에 따른 보호문제이다. 그동안 連送, 保險, 貿易, 金融, 通信, 醫療, 法務 등 서비스 분야의 국제교역은 꾸준히 증가되어 왔으나, 이의 거래질서를 규율하는 국제규범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국가에 따라서는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WTO에서도 서비스 協定(GATS)이 체결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새로운 국제규범이 마련된 셈이다. 따라서 서비스 분야는 國際通商法의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 아울러 WTO에서는 國際投資 및 知的財産權의 이전에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제, 즉 무역관련 投資措置(TRIMs) 및 무역관련 知的財産權(TRIPs)의 보호와 자유화조치 등에 관한 국제규범도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국제무역의 대상은 기존의 상품교역에서부터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의 이전에 관한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이 분야는 國際通商法의 영역에서 연구되게 되었다.

셋째, 통상문제와 연계하여 새로운 논의의 대상이 되는 분야는 環境·勞動·技術·競爭政策 등에 관한 분야이다. 뉴라운드 4Rs라고 하는 이러한 네 가지 분야는 현행 WTO 체제속에 규범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앞으로 雙務協商 내지는 多者間協商을 통하여 통상과 연계된 국제규범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그린라운드(Green Round : GR)라고 칭하는 環境分野의 협상은 이미 WTO의 무역환경위원회에서 깊이 논의되고 있다. 즉, 환경기준을 국제표준화하고 각국이 環境保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生産費가 낮아져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품에 대하여는 輸出入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相計關稅를 부과하는 등의 규제를 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② 블루라운드(Blue Color Round : BR)라고 칭하는 勞動分野의 협상목표도 근로조건의 국제표준화를 통하여 특정국가의 인권유린이나 賃金 또는 勤勞條件 등이 열악하여 生産費가 낮아져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품에 대하여는 貿易規制를 가하여야

7) 金容日·朴承基, UR 最終協定解說, 韓國貿易經濟, 1994, pp.18~19

한다는 것이다. ③ 기술라운드(Technology Round : TR)라고 칭하는 技術分野의 협상목표는 정부기술정책의 국제표준화를 통하여 특정국가에 수입상품에 대한 특수한 技術規格 또는 標準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인력의 자유로운 이동과 국제적인 협력을 보장하며, 또 정부의 기술개발(R&D) 특혜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④ 경쟁라운드(Competition Policy Round : CR)라고 칭하는 競爭政策分野의 협상목표는 경쟁조건의 국제표준화를 통하여 특정국가에 자국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등 公正한 競爭을 제한하는 각국의 복잡한 시장구조 또는 기업관행을 철폐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⁸⁾

넷째, 위와 같은 상품, 서비스, 투자 및 지적재산권 이전의 반대급부로서 화폐의 이동에 따른 國際收支 및 換率問題도 國際通商法の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국제적인 실물거래에 기인한 화폐의 교환에 따른 국제수지 및 환율의 변동에 관한 문제는 기존의 IMF 등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또 국제수지나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무역불균형에 관한 문제는 WTO 협정에서 규율하고 있다.

3. 國際通商法の 構成體系

최근 國際通商秩序는 UR 협상의 타결 및 EU, NAFTA, ASEAN 등 지역경제 블록의 강화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國際通商秩序의 다층적인 복합구조 때문에 國際通商法の 構成體系도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복잡다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國際通商法の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하여는 그 구성체계의 정립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國際通商法은 국제통상의 經濟法的인 이념과 규제에서부터 貿易去來의 전반적인 진행과정에 걸쳐 규범화되어 있는 모든 國際法規를 지칭하는 것이다.⁹⁾ 여기에는 국가 또는 개인의 합의에 따라 그 내용을 바꾸거나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는 任意法規도 있고 이를 임의로 바꿀 수 없는 強行法規(jus cogens)도 있으며, 또 통상문제에 관련된 여러 규범의 충돌을 통하여 國際統一法으로 형성되어가는 것도 있지만 아직 國際規範으로 마련되어 있지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國際通商法

8)拙著, 國際通商法, 三英社, 1996, pp 71~72

9) Jackson & Davey. op. cit., pp.4~5.

의 구성체계를 논하는 일은 간단한 것이 아니다. 단지 본고에서는 國際通商法の 법체계상 地位와 타법과의 關係 및 그 構成體系에 관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1) 法體系上的 地位

國際通商法이 하나의 독립된 法體系로서 그리고 학문적인 獨自性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그 실질적인 대상이 自主性이나 主體性, 合理性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國際通商法の 일관된 對象으로는 국제통상의 主體인 국제기구, 국가 또는 정부, 기업 또는 개인, 그리고 국제통상의 客體인 상품, 서비스, 기술투자, 지적재산권, 국제수지 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또 이러한 분야는 학문적으로도 國際通商이라는 主體性과 합리적인 목적을 바탕으로 성립되며, 새로이 발전하는 환경, 이론, 기술, 제도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연구할 수 있는 法域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國際通商法은 일반적인 법체계상 어떠한 地位에 있는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법은 그것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이 만든 것인지에 따라 自然法(natural law)과 實定法(positive law)으로 나눌 수 있는데, 國際通商法은 국제무역을 영위하기 위하여 인간이 만든 實定法에 속한다.

둘째, 법은 다시 국제사회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국내사회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國際法(international law)과 國內法(domestic law)으로 나눌 수 있는데, 國際通商法은 국제사회에 필요한 것이므로 國際法에 속한다. 특히 國際通商法은 민법이나 상법과 같은 國內私法과 구별되어야 한다. 국내사법은 私人的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國內法인 데 반하여, 國際通商法은 국제사회에서의 통상문제에 관한 國際法이다. 따라서 國際通商法の 해석은 국제법을 배제하고 國內法の 기초위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아니될 것이다.

셋째, 법은 무차별적으로 그 적용대상을 정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의 사람, 물건, 행위 등에만 적용하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 一般法(general law)과 特別法(special law)으로 나눌 수 있는데, 國際通商法은 국내 내지 국제사회의 기본법률 상위에 둔 特別法에 속한다. 즉, 國際通商法은 유엔 헌장과 같은 國際基本法과 구별되어야 한다. 國際通商法은 국제사회에 필요한 법이라는 점에서 국제기본법과 맥락을 같이 하지만, 오늘날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國際關係가 폭발적으로 증

가하고 세분화됨으로써 국제기본법 이외에 수많은 國際特別法이 성립·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國際通商法은 국제법을 일반법으로 하는 國際特別法의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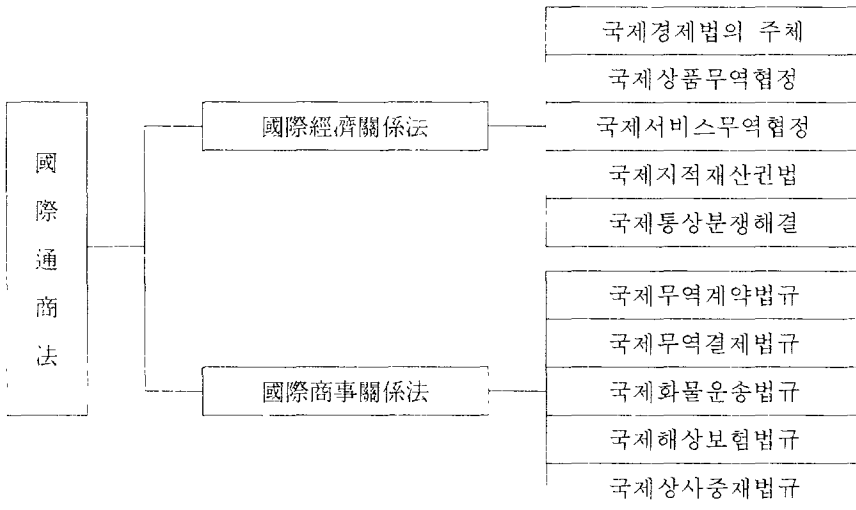
넷째, 법은 그 법률관계의 규율대상이 수직관계에 있느냐, 아니면 수평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公法(public law)과 私法(private law)으로 나눌 수 있는데, 國際通商法은 국가 또는 정부단위의 조약이나 협정에 따라 정부나 공공기관의 활동을 수직적으로 규율하는 國際公法에 속하는 것도 있으며, 또 타국에 있어서의 기업이나 개인의 활동을 수평적으로 규율하는 國際私法에 속하는 것도 있다. 즉, 國際通商法에는 공법성과 사법성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특히 國際通商法은 國際私法과 구별되어야 한다. 國際私法은 국제경제에 관한 측면이나 또는 국가간 법률관계의 저축과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企業, 個人, 기타 私的인 단체의 활동이 일국의 국경을 넘을 때 그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 데 반하여, 國際通商法은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인 實質通商關係를 규율하기 위한 國際公法과 國際私法이 혼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¹⁰⁾

(2) 國際通商法の 體系

국제통상의 흐름은 각국이 경제학적으로 무역이익을 분석하고 通商政策에 따라 외국과 通商協商을 진행하면서, 거래당사자인 기업이나 개인은 각기 수출입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輸出入契約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이행해 나가는 계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國際通商法은 바로 이러한 국제통상의 各段階에 걸쳐 질서유지와 교역증진 내지 규제를 위하여 존재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國際通商法은 <그림 1>에서와 같이 우선 거시적인 國際經濟關係를 규율하는 國際經濟法の 영역과 다른 한편으로는 거래당사자간의 사적인 貿易關聯契約과 商事紛爭解決 등을 규율하는 國際商事法の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0) 高着煥, 國際去來論, 經進社, 1987, pp.19~20.



〈그림 1〉 國際通商法の體系

첫째, 國際經濟法(international economic law)의 영역은 대체로 WTO나 OECD를 비롯한 국제경제기구, 지역공동체 또는 국가단위와 같은 國際經濟主體에 관한 규범, 그리고 국제경제활동의 객체에 따른 商品貿易規範, 서비스貿易規範, 資本去來規範, 國際知的財産權規範 등에 의하여 구성되어진다. 단지 본고에서는 국제통상의 직접대상이 되는 商品·서비스·知的財産權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國際經濟法の體系는 국제경제질서의 변화와 각국의 정책방향이나 論者들의 시각에 따라 여러 각도에서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國際商事法(international commercial law)의 영역은 일반적으로 거래당사자간에 貿易關聯契約이 체결되어 상거래가 종료되기까지의 진행과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구성요소로는 國際貿易契約法規, 國際貿易決濟法規, 國際貨物運送法規, 國際海上保險法規, 國際商事仲裁法規 등이 있다.¹¹⁾

11) 梁暎煥·徐正斗, 國際貿易法規, 三英社, 1994, pp.19~20.

III. 通商法으로서의 國際經濟法 研究

1. 國際經濟法の 意義

國際經濟法の 개념은 학자에 따라 그 範圍와 對象을 달리 보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이는 국가간 또는 국가와 개인간의 國際經濟關係를 규율하는 國際法 내지 國內法으로 정의된다.¹²⁾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國際經濟法은 國家間 또는 國家와 個人간의 關係를 규율하는 법이다. 예컨대 WTO 협정과 같이 국가간의 國際通商關係를 규율하는 國際規範이나, 또는 미국정부가 자국의 통상법에 따라 타국의 수출업자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이 國家와 個人간의 經濟關係를 규율하는 법은 국제경제법에 속한다.

둘째, 國際經濟法은 國際經濟關係를 규율하는 법이다.¹³⁾ 일국의 경제관계를 국내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國內經濟와 해외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國際經濟로 나눈다면, 國際經濟法은 순수한 국내경제부문은 제외하고 國際經濟關係와 기타 國際經濟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경제를 규율의 대상으로 한다.¹⁴⁾ 예컨대 농업보조금을 받고 생산한 농산물의 수출은 WTO 협정의 저축을 받지만, 이것이 무역과 관계없이 국내의 순수한 농업기술연구에 대한 보조금일 경우에는 WTO 협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제경제관계의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商品의 交易, 서비스, 知的財産權, 貿易關聯投資, 資本의 이동, 換率의 결정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또 최근에는 環境, 勞動, 技術 및 競爭政策分野 중에 貿易과 관련된 부문도 國際經濟法の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셋째, 國際經濟法은 國際法뿐만 아니라 國際經濟에 관련된 國內法도 포괄하는 법이다. 예컨대 WTO와 같은 협정은 국가간의 국제경제에 관하여 규율하는

12) 張孝相, 前掲書, p.1; 李相潤, 前掲書, pp.43~44.

13) Jackson & Davey, op. cit., p.5; Ignaz Seidl-Hohenveldern, op. cit., p.1.

14) 佐藤和男 譯, 國際經濟法の基本問題, 峯巖野書院, 1989, pp.11~12(Georg Erler, Grundprobleme des Internationalen Wirtschaftsrechts, 1956).

國際法이지만, 각국이 국제규범의 범위내에서 기업이나 개인의 국제경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제정·운용할 때 이는 國際經濟에 영향을 미치는 國內法으로서 國際經濟法의 대상이 된다. 미국의 通商法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2. 國際經濟法의 法源

國際經濟法은 國際經濟에 관하여 국가간 또는 국가와 개인간에 多者間的 協定이나 雙務的인 協定을 통한 명확한 행동지침을 부여하는 실질적인 규범이다. 여기서 '國際經濟'라 함은 한 나라의 경제활동이 국내부문에만 국한하지 않고 국제적인 경제활동에도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國際經濟法은 國際經濟에 관한 公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國際經濟에 관한 私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國際商事法이나 國際去來法 등과 구별된다.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공법과 사법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지만, 國際經濟法은 국가간 또는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公法으로서 분류될 수는 있으나 기타의 기업이나 개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적인 성격은 없다. 구체적으로 國際經濟法의 성립형식이나 존재형식을 말하는 法源(the sources of law)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¹⁵⁾

첫째, 國際經濟法의 가장 원천이 되는 法源으로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체결한 多者間的 국제경제에 관한 協定이나 協約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WTO 협정과 IMF 협약이다. WTO 협정은 기존의 GATT 체제하에 참여한 다자간의 通商協商을 통하여 체결된 國際協定이다. 그리고 IMF 협약은 外換去來秩序와 환율의 安定 등을 규율하기 위한 다자간의 국제경제법이다.

둘째, 國際經濟法의 法源으로서 세계의 특정지역의 국가가 형성된 經濟블록에만 적용되는 地域主義的 國際協定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로는 EU, NAFTA, ASEAN 협정 등이 있다. 이러한 협정의 효력은 각각의 會員國에만 적용될 뿐 다른 지역의 국가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셋째, 國際經濟法의 法源으로서 두 개 또는 약간의 국가들이 相互間的 협상을 통하여 당해국가에만 적용하도록 체결한 雙務的 國際協定을 들 수 있다. 대표

15) Ignaz Seidl Hoheveldern, op. cit., pp 31~37

적인 예로는 한·미 무역협정, 미·일 무역협정 등이 있다. 이러한 雙務內 貿易協定은 WTO의 다자간주의에 입각한 最惠國待遇의 원칙에 위배되지만, 국제경제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밖에도 國際經濟法の 국제법적인 法源으로는 國際慣習法, 국제기구의 議決事項 등이 있을 수 있다.

넷째, 위와 다른 측면에서 國際經濟法の 法源으로는 국제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에서의 국제경제를 규율하기 위한 國內法을 들 수 있다. 미국, EU, 일본,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이러한 목적의 國內法을 보유하고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對外貿易法, 關稅法, 外國換管理法 등은 대표적인 國際經濟關係의 國內法이다. 이러한 특별법은 국가가 WTO 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한, 국제규범에 영향을 받게 되고 또 거꾸로 각국의 國際經濟關聯 國內法은 국제규범의 제정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3. 國際經濟法과 他法과의 關係

國際經濟法은 인접된 여러 법학분야로부터 分離·獨立된 한 法體系를 갖는다. 국제경제법에 인접된 법학분야는 國際法, 國際私法, 經濟法 등이 있다. 첫째, 國際法과의 關係에 있어서 國際經濟法은 국제경제관계를 규율하는 법인 반면에, 國際法(international law)은 國家間 또는 國際團體間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國際經濟法은 경제를 규율하는 국제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國際經濟關係를 규율하는 國際法과 國內法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국제법이 국가간의 주권, 전쟁, 경제관계 등 국제사회의 다양한 분야를 그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國際經濟法도 국제법의 한 분야라고 보는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국제경제법은 國際經濟關係의 國內法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한편 國際經濟法과 國際法은 그 주체가 국가간 또는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公法이라는 측면에서는 서로 공통점이 있다.

둘째, 國際私法과의 關係에 있어서 國際私法(private international law)은 國際公法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이는 기업이나 개인의 활동이 일국의 국경을 넘을 때 그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다. 그러나 오늘날 國際公法的인 규범이 개인의 행위를 규율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규

법을 단순히 國際公法과 國際私法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여하튼 國際私法은 국제사회에서의 企業이나 個人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관계라고 볼 때, 國際經濟法은 국가간 또는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公法關係라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한편 國際經濟法과 國際私法은 그 규율대상이 경제관계라는 측면에서는 서로 공통점이 있다.

셋째, 經濟法과의 關係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經濟法(economic law)이라고 하면 이는 國內經濟關係를 규율하는 법으로 인식되어 있는 반면에, 國際經濟法은 國際經濟關係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대조적이다.¹⁶⁾ 단지 國際經濟法과 국내관계의 經濟法은 그 대상이 주권, 전쟁 등이 아닌 經濟關係라는 측면에서는 서로 공통점이 있다.

결과적으로 國際經濟法은 國際法과 國內法の 性質을 동시에 지니고 또 국제경제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이라는 점에서 이는 기존의 國際法, 國際私法, 經濟法 등의 어느 실정법에도 예속될 수 없는 것이다. 즉, 國際經濟法은 그 주체와 규율대상, 연구범위가 인접분야의 다른 實定法과 구별되는 獨白性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⁷⁾

IV. 通商法으로서의 國際商事法 研究

1. 國際商事法の 意義

國際商事法(international commercial law)의 개념과 명칭은 學者에 따라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으나, 이는 대체로 국제경제관계 중에서 국제기구나 어느 국가의 정부간 또는 정부와 개인간의 公法的인 法律關係를 제외한 오로지 商去來當事者인 기업이나 개인간의 私法性 商事關係를 규율하는 法體系를 말한다.¹⁸⁾ 여

16) 佐藤和男 譯, 前掲書, pp.11~12.

17) 張孝相, 前掲書, pp.4~5; 李相潤, 前掲書, p.62; 高俊誠, 國際通商法, 韓國貿易協會 國際貿易研修院, 1995; 徐憲濟, 前掲書, pp.34~36.

18) 朴煥日, 國際去來法, 韓國經營法務研究所, 1995, pp.4~5; 崔竣璿, 國際去來法, 三英社, 1996, p.40 다만 國際商事法이 후술하는 國際去來法の 개념을 포괄하는 법률이라고 보아

기에는 국제상사와 관련된 當事者들 사이의 權利義務를 규정하는 賣買契約法, 換去來契約法, 國際運送法, 海上保險法 그리고 商事紛爭解決의 절차법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상사법은 후술하는 國際去來法의 개념을 포괄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1) 國際商事法の 性質

國際商事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範圍가 넓고 多樣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¹⁹⁾ 첫째, 國際商事法은 國際性을 지닌 법이다. 즉, 서로 다른 국가에 營業所를 둔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商事關係가 국제상사법의 규율대상이 된다. 각국은 그 고유의 주권과 생활관습을 지니며, 또 언어, 문화, 법제도 등이 각기 다른 환경속에서 國際去來를 하게 된다. 國際商事法은 바로 이러한 국제적 異質性을 전제로 성립되는 법이다.

둘째, 國際商事法은 주로 私法的 性質을 지닌 법이다. 즉, 國際商事法은 국제사회에서의 私法關係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하고, 그 주체인 국제거래의 당사자의 商行爲와 거래객체인 物品, 서비스, 技術移轉, 기타 知的財産權의 移轉 등에 따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셋째, 國際商事法은 商去來性을 갖는 법이다. 국제거래가 모두 상거래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부분 기업적 생활관계에 특유한 동종행위를 통하여 企業營利性과 去來安安全性을 추구하고 있다. 여기서 企業營利性이란 기업의 활동 중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행위를 말하며, 또 去來安安全性이란 국제거래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기업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그러한 예로는 국제거래의 普通約款을 정형화하거나 신용장, 해상보험, 무역보험, 선물환제도 등이 있다.

넷째, 國際商事法은 利益調和를 위하여 존재하는 법이다. 國際商去來는 주로 그 주체인 기업이나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각국의 국가적인 이익과 세계평화의 이념과 같은 여러 가지의 이익 및 이념이 충돌되는 경우가 많은데, 國際商事法은 이들 사이의 타협 또는 조화를 위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엔

이들 제위의 연구자료상에서 사용된 “國際去來法”의 용어를 “國際商事法”으로 변경하여 인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19) 高濬煥, 前掲書, pp.16~18; 徐正斗, 前掲書, pp.80~81.

의 國際物品賣買統一法(Vienna Convention)이나 信用狀 統一規則(UCP), 海上運送의 國際協約(Hague Rules), 보험시장에서의 協會積荷約款(ICC), 商事仲裁協約(New York Convention)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2) 國際商事法の 法源

國際商事法은 국가간에 있어서의 貿易去來에 관련된 모든 法體系로서,²⁰⁾ 이는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으나, 오늘날의 國際商事法の 源천을 형성하는 法源(sources of law)은 국제상거래의 현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國際司法裁判所의 규정 제38조에 따르면, 국제사법상의 분쟁을 재판함에 있어서 ① 일반적인 國際協約으로서 분쟁국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규칙, ② 법률로 인정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國際慣習, ③ 文明國이 승인한 法律의 일반원칙, ④ 법규결정의 보조수단인 判例 및 저명한 국제법학자의 學說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법의 한 분야로서 國際商事法이 법체계로서 성립되는 法源은 國際協約이나 조약, 國際慣習과 거래규칙, 文明國法의 일반원칙, 國際判例나 관정 또는 저명한 국제법학자의 學說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중에서 특히 국제협약과 관습 및 문명국가의 법률의 일반원칙은 오늘날 국제상사법의 대표적인 法源으로서 인용되고 있다.²¹⁾

첫째, 國際協約(international convention)이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國際法の 주체인 국가와 국가간에 일정한 法律效果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문서로 교환되는 명시적인 合意決定을 말한다. 협약의 의미로 사용되는 유사명칭으로는 條約(treaty), 協定(agreement), 規約(statute), 議定書(protocol), 合意 覺書(memorandum), 憲章(charter)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들은 반드시 일정한 원칙에 따라 구별하여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협약이나 조약에 속하는 대표적인 국제상사법에는 1980년 UNCITRAL의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유엔 協約” 등이 있다.

둘째, 國際慣習(international practice)이나 慣習法²²⁾은 당사자간의 명시적 규

20) 山田錄一・三野 寛, 國際取引法, 有斐閣, 1992, pp.9~10.

21) 榮暎煥・徐正斗, 前掲書, pp.17~25, 崔峻瑛, 前掲書, pp.49~52.

22) 여기서 “慣習法”이라 함은 同一한 지역의 同一한 직업 내지 同一한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정한 행위가 오랫동안 반복되어, 첫째로 그것이 하나의 社會規範으로서 발

정이 없는 사항 또는 당사자약정의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해석 기준이 되는 당사계약의 주요한 法源이 되는 것이다.²³⁾ 즉, 동일한 거래방식의 오랫동안 반복에 의하여 형성되는 국제관습 또는 관습법은 계약의 묵시조항(implied terms)으로서 계약내용을 보완하고 해석하는 데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국제관습은 그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國家나 이에 해당되는 去來當事者에 한하여 유효하게 된다. 예컨대 1980년 비엔나 협약 제9조에는 국제관행과 관습의 효력에 관하여, “(1) 당사자는 그들이 합의한 모든 慣行(usage)과 당사자간에 확립되어 있는 모든 慣習(practice)에 구속된다. (2)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가 알았거나 또는 당연히 알았어야 하는 慣行으로서 국제무역에서 해당되는 특정무역에 관련된 종류의 계약당사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慣行은 당사자가 이를 그들의 契約 또는 契約成立에 묵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²⁴⁾ 국제관습은 國際商業會議所(ICC) 또는 기타 관련된 국제민간기구에 의하여 統一規則으로 입법화된 경우가 많으며, 이것은 비록 強行法規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의 국제거래에서는 準據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미 입법화된 대표적 國際商慣習에는 ICC의 “定型去來條件의 解釋에 관한 國際規則,” “貨換信用狀 統一規則 및 慣例” 등이 있다.

셋째, 주요 文明國家의 法律의 일반원칙도 國際商事法の 법원으로서 자주 인용되고 있다. 예컨대 물품매매에 관한 영국의 “物品賣買法,” 미국의 “統一商法典 제2편 賣買” 등, 신용장에 관한 미국의 “統一商法典 제5편 信用狀,” 환어음에 관한 영국의 “換어음法,” 해상보험에 관한 영국의 “海上保險法” 등이 그것이다.

2. 國際商事法の 構成體系

國際商事法은 앞서 논한 바와 같이 대체로 무역거래 當事者間의 私法性 商

생·합의 또는 확립되고, 둘째로 그것이 法的效力을 인정할만한 가치가 있으며, 셋째로 그것이 公序良俗에 반하지 아니하고, 넷째로 국가가 법률 또는 관례에 의하여 그 法的效力을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이에 비하여 아직 慣習法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경우 이를 “慣習”(customs) 또는 “慣行”(usage)이라고 한다.

23) 우리나라涉外사법 제28조에도 “상사에 관하여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商慣習에 의하고, 상관습이 없으면 민사에 관한 준거법을 적용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24) John O.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Netherlands, 1991, p.113

事關係를 규율하는 법체계를 말한다. 무역거래는 오랫동안 축적된 상관습과 국제법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인 상관습과 규칙 및 기타 商事關係法の 체계는 국가와 국가간의 물자에 대한 商去來活動, 즉 貿易商務의 현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貿易商務의 실체는 언어와 풍습이 다른 외국의 당사자와 물품의 품질을 결정하고 서신이나 전신에 의하여 가격·수량·인도·보험·결제 등의 거래조건을 절충한 후 개별적인 賣買契約를 체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일단 무역계약이 성립되면 물품의 선적과 인도는 육·해·공의 國際運送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손해는 海上保險에 의하여 커버되며, 또 그 代金決濟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換去來約定에 따라 행하여진다. 그 후 거래당사자간에 商事紛爭이 발생할 경우에는 화해·알선·조정·중재·소송의 방법으로 이를 해결한다. 무역상무의 학문적 체계도 이러한 무역계약의 성립에 관한 賣買契約論을 주분야로 하고 이 계약의 이행과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국제운송론, 해상보험론, 무역결제론, 상사중재론 등을 종속분야로 하여 구성된다. 따라서 國際商事法の 구성체계도 위와 같은 무역거래의 일반적인 진행과정에 따라 분류해 보면, 크게 貿易契約法, 貿易決濟法, 國際運送法, 海上保險法, 商事仲裁法 등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貿易契約法規라고 하면 物品賣買契約에 관련된 國際規則이나 協約 및 이에 대한 법이론의 기초를 제공하는 準據法 등을 말한다. 무역계약은 FOB나 CIF와 같이 이미 定型化된 去來條件에 따라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규율하는 국제규칙으로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936년에 제정하여 다섯번째로 개정한 “定型去來條件의 解釋에 관한 國際規則”(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 INCOTERMS 1990)이 있다. 인코텀즈는 오래전부터 상인들간에 전해져 온 매매관습을 ICC가 국제적으로 통일을 기한 것으로서 오늘날 무역매매관습의 기초를 이룬다.²⁵⁾ 또 무역계약의 성립과 매매에 관한 준거법의 채택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에서 1980년에 제정한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유엔 協約”(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Vienna Convention)이 있다. 비엔나 협약은 국제물품매매법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이다.²⁶⁾ 기타 물품매매에 관

25) ICC, Guide to Incoterms 1990, Publication No. 461/90, 1991. p.8.

26) Honnold, op cit., p.47 ; 梁暎煥·徐正斗, 前掲書, p.209.

련하여 영국의 1979년 “物品賣買法”(Sale of Goods Act : SGA)과 미국의 1941년 “改正美國外國貿易定義”(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등이 있다. 특히 영국의 물품매매법은 1893년에 제정되고 1979년에 개정된 것으로서 오늘날 물품매매에 관한 가장 전통적인 準據法으로 인정되고 있다.²⁷⁾

둘째, 貿易決済法規라고 하면 수출상품의 賣買代金決済에 관련된 國際規則이나 주요국가의 準據法 등을 말한다. 현재 ICC가 1933년에 제정하여 다섯번째로 개정된 “貨換信用狀 統一規則 및 慣例”(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는 앞서 언급한 무역계약관련의 인코텀즈와 함께 무역상부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代金決済法規이다. 기타 외국환의 추심업무를 위하여 ICC가 1956년에 제정하여 1995년 세번째로 개정된 “推收에 관한 統一規則”(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신용장에 관한 유일한 제정법인 미국의 1995년 “統一商法典 제5편 信用狀”(Uniform Commercial Code - Article 5 Letter of Credit), 그리고 환어음에 관한 전통적인 영국의 1882년 “換어음법”(Bills of Exchange Act) 등은 무역결제법의 연구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國際運送法規라고 하면 화물의 해상·항공·육상 또는 복합운송에 관련된 國際規則이나 協約을 말한다. 국제운송의 중심은 해상운송이며, 이에 관한 최초의 준거법은 1924년 “船貨證券에 관한 法規의 統一을 위한 國際協約”(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 : Hague Rules)이다. 또 이 규칙을 기초로 하여 1978년 유엔에서 제정한 “海上貨物運送에 관한 유엔 協約”(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 Hamburg Rules)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르크 규칙의 연구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²⁸⁾ 아울러 최근에 활성화된 복합운송에 대비하여 1980년에 유엔에서 제정한 “國際貨物複合運送에 관한 유엔 協約”(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 등이 있다. 이 밖에도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협약인 1929년 “國際航空運送에 관한 一部規則의 統一을 위한 協約”(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by Air : Warsaw Convention), 그리고 최근에 비유럽

27) M.D. Chalmers, The Sale of Goods Act 1893, London, 1920, p.7 ; A.G. Guest, Benjamin's Sale of Goods, 3rd ed., London, 1987, pp.3~4.

28) E.R.H. Ivamy,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13th ed., London, 1989, p.105.

성의 해상화물운송장과 전자식 선화증권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국제해사위원회(CMI)가 1990년에 제정한 “海上貨物運送狀에 관한 統一規則”(Uniform Rules for Sea Waybills)과 “電子式 船貨證券에 관한 規則”(Rules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 등이 있다.

넷째, 海上保險法規라고 하면 해상보험에 관련한 國際規則과 準據法 및 標準約款 등을 말한다. 특히 1906년에 제정된 영국의 “海上保險法”(Marine Insurance Act : MIA)은 해상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손해보험에 이르기까지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준거법으로 인정되고 있다.²⁹⁾ 또 런던보험업자협회(ILU)와 로이즈 보험업자협회(LUA)의 合同積荷委員會가 규약관에 대체하여 1982년에 대폭 개정한 “協會積荷約款”(Institute Cargo Clauses : ICC)은 세계보험시장의 약 2/3 이상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 協會積荷約款은 수십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약관은 1982년 ICC(A), (B), (C)조건이다. 이 밖에도 해상무역에서 共同海損損害와 비용의 분지에 관하여 국제해사위원회(CMI)가 마련한 1994년 “요크-앤트워프 규칙”(York and Antwerp Rules : YAR)도 중요한 국제규칙이다.

다섯째, 國際商事仲裁法規라고 하면 무역클레임의 조정이나 중재에 관련된 국제기구의 協約과 仲裁規則 및 국가간의 仲裁協定 등을 말한다.³⁰⁾ 특히 각국정부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법을 통일하고자 유엔에서 1958년 체결된 “外國仲裁判정의 承認과 執行에 관한 유엔 協約”(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New York Convention)은 국제적으로 가장 기초가 되는 상사중재협약이다. 또 유엔에 중재재판소는 없으나 각국 상사중재법규의 조화와 통일을 위하여 國際貿易法委員會가 1976년에 제정한 “유엔 國際貿易法委員會 仲裁規則”(UNCITRAL Arbitration Rules)은 각국의 중재계약에서 널리 원용되는 규칙이다. 다른 한편으로 國際商業會議所(ICC)는 자체내에 중재재판소를 설치하고 1975년부터 국제상사분쟁의 우호적인 조정이나 중재에 적용할 “任意的인 調停規則”(Rules of Optional Conciliation)과 “國際商業會議所 仲裁規則”(Arbitration Rules)을 제정 및 개정해

29) Michael J. Mustill & JCB Gilman, *Arnould's Law of Marine Insurance and Average*, 16th ed., London 1981, p.3, n. 2.

30) Martin Domke, *Domke on Commercial Arbitration*, Revised Edition by Gabriel M Wilner, Illinois, 1990, p 1

오고 있다.³¹⁾ 이 밖에도 세계의 각 지역별 또는 국가별로 상사중재기관의 질서있는 상사중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상호 仲裁協定(mutual arbitration agreement)을 교환해 두고 있다.

3. 國際商事法の 研究範圍

오늘날 국제상거래는 物品賣買契約(contract for sale of goods)을 비롯하여, 서비스·자본 또는 기술의 이동을 수반하는 産業設備輸出契約, 특허·상표·노하우 등 지적재산권의 國際라이선싱契約, 合作投資契約, 海外建設工事契約, 海外資源開發契約, 海外借款契約, 販賣代理店契約, 國際M&A契約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國際商事法の 연구범위도 물품매매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날로 복잡·다기해지는 국제상거래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제상거래가 물품·서비스·기술·자본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國際商事法の 研究範圍도 크게 보면 매매관련 계약, 기술이전계약, 국제투자계약, 노무관련계약, 자본거래계약 등으로 나눌 수 있다.³²⁾

(1) 物品賣買關聯契約

상거래계약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物品賣買契約이다. 물품매매에 관련된 계약은 다시 國際物品賣買契約과 物品賣買補助契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國際物品賣買契約은 매도인이 대금이라는 금전상의 약인을 대가로 외국의 매수인에게 물품의 所有權을 移轉하거나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賣買契約의 내용은 그 대상이 되는 物品에 따라 다르며, 또 동종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거래조건, 이행기간의 장단 등의 차이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賣買契約 중에는 단 한번 선적 또는 인도를 함으로써 매도인의 義務履行이 완료되는 것도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 수회 선적 또는 인도를 반복하여야 할 경우도 있다. 매매관

31) ICC, Rules of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Publication No. 447, 1987, p.5.

32) 林道日, 前掲書, pp.73~349; 崔竣培, 前掲書, pp.61~65.

런계약에는 短期賣買契約(spot sales agreement), 長期賣買契約(long term sales agreement), 플랜트輸出契約(plant export agreement) 등이 있다. 둘째, 物品賣買補助契約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賣買去來에 제3자가 개입하여 이를 보조하는 각종 계약을 말한다. 제3자의 개입은 代理店, 販賣店, 受託人 등의 형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賣買補助契約에는 代理店契約(agency agreement), 販賣契約(distribution agreement), 委託契約(consignment agreement) 등이 있다.³³ 이 밖에도 매매계약으로부터 파생되는 계약으로는 화물운송을 위한 國際運送契約, 운송중의 위험담보를 위한 保險契約, 무역대금결제를 위한 貨換就結契約 등이 있다.

(2) 技術移轉契約

技術移轉契約의 대상은 特許權, 商標權, 著作權, 노하우 등 넓은 의미의 知的財産權(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다. 지적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技術移轉契約을 흔히 “라이선싱契約”(licensing agreement)이라고 한다. 라이선싱契約은 어떤 권리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licensor)으로부터 그 권리의 이용 또는 技術援助를 받는 사람 licensee)에 대하여 권리 또는 技術의 使用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아가서 권리 또는 技術使用의 허가와 동시에 기술자의 파견 또는 종업원의 훈련프로그램을 담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技術者派遣契約(technical guidance agreement)이라고 한다. 이 밖에도 권리의 사용허가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技術指導만을 위한 형태의 技術者派遣契約 또는 技術者指導契約 등이 있으며, 이들 계약에 수반하여 기술상의 秘密을 유지할 목적으로 당사자간에 秘密維持契約(confidentiality agreement)이 체결되는 경우도 있다.

(3) 國際投資契約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기 위한 投資契約은 현지화의 정도에 따라 해외사무소, 지점 또는 現地法人의 設立契約, 合作投資契約, 프랜차이징, 기업의 買收·合併(M&A)契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海外事務所(representative office)는 현지에 주재원을 두고 영업활동의 전단계에서 거래처와의 연락사무, 기타 본사의

33) 李泰熙, 國際契約法, 學研社, 1985, p.454

지시사항을 이행하거나 현지시장의 調査, 研究·開發活動을 수행하는 정도를 말한다. 또 支店(branch)은 진출지역에서 본사의 모든 營業活動을 대행하는 단계이며, 원칙적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 위의 事務所와 支店을 포괄하여 支社라고 한다. 둘째, 現地法人(subsidiary)은 현지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기 때문에 본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체이며, 본사의 업무와 관세없이 현지법상 허용되는 모든 企業業務를 취급할 수 있다. 셋째, 合作投資(joint venture)는 현지의 유력한 기업이나 인사와 共同으로 出資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합작 파트너와 순조로운 사업을 전개해 가려면 무엇보다도 투자지분율의 조정, 경영권의 분담, 자금조달의 책임 등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國際프랜차이징(international franchising)은 현지 사업가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본사의 상호, 상표, 기타 영업표지를 그대로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약은 세계적으로 지명도나 선호도가 높은 기업의 품목이 적합하다. 다섯째, 買收·合併(M&A)이란 둘 이상의 기업이 統合하여 하나로 되는 合併(merger)과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하여 經營權을 획득하는 買收(acquisition)를 함께 일컫는 말이다. 최근 해외기업에 대한 M&A 계약은 先進技術의 도입, 기존판매망과 顧客基盤의 인수, 유명브랜드의 사용, 貿易摩擦의 회피, 경영다각화 등을 목적으로 매우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³⁴⁾

(4) 勞務關聯契約

勞務關聯契約은 都給契約, 雇傭契約, 勞務契約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都給契約은 도급대상에 따라 製作物供給契約(production agreement : 불품제작을 도급하는 계약), 工事都給契約(civil engineering agreement : 공사시공을 도급하는 계약), 건물 등 建設契約(building construction agreement : 건물 등의 건설을 도급하는 계약), 委託加工契約(processing agreement : 원료의 가공을 도급하는 계약), 經營委託契約(management agreement : 기업경영을 도급하는 계약) 등으로 나누어진다. 둘째, 雇傭契約은 기업이 해외의 현지에서 企業人事組織을 구성할 때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내부적으로는 사장, 직원 등을 고용하기도 하고

34) 최근 國際的인 企業 M&A 契約은 영국·독일 등 유럽의 先進國 기업들의 주도로 급증세에 있다(中央日報 1996. 11. 10. 보도자료).

(employment agreement), 외부적으로는 판매원을 고용하기도 한다(salesman agreement). 셋째, 勞務契約에는 변호사고용계약(retainer agreement)처럼 특별한 資格을 갖춘 자의 노무를 구하는 형태도 있고, 拷問招聘契約(advisor agreement)이나 勞務提供契約(service agreement)과 같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특별한 能力이 있는 자의 노무를 구하는 경우도 있다.

(5) 資本去來契約

資本去來契約에는 자본의 海外投資契約, 融資(借款)關聯契約, 國際金融리스契約, 國際팩토링契約 등이 있다. 첫째, 자본의 海外投資는 주로 주식, 지분, 자산(동산)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은 주주간의 share holders 계약, general partnership 계약, limited partnership 계약, share purchase 계약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또 해외의 자산투자는 asset purchase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둘째, 해외의 融資關聯契約은 借款契約(loan agreement)과 擔保契約(security agreement)으로 구성된다. 融資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으로부터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용자와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한하여 구상을 할 수 있는 용자가 있는데, 특히 후자를 프로젝트金融契約(project finance agreement)이라고 한다.³⁵⁾ 한편 용자금 반환을 위한 담보에는 人的擔保와 物的擔保가 있다. 인적담보는 보증서의 징구 또는 保證契約(letter of guarantee agreement)에 의하며, 또 물적담보는 질권, 지당권, 기타 각종의 담보권의 설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셋째, 國際리스契約은 최근 들어 급속히 성장한 분야로서, 그 종류는 다양하지만 金融리스契約(finance lease agreement)과 運用리스契約(operating lease agreement)이 전형적인 형태이다. 전자는 리스업자인 레서(lessor)가 용자 대신 생산자 등으로부터 대상물품을 매수하여 이를 리스이용자인 레시(lessee)에게 이용케 하는 방법인데, 이를 통하여 리스업자는 리스이용자로부터 融資金과 그 利息에 상당하는 금액의 리스료를 받는다. 이러한 거래가 경제적으로 볼 때 용자와 유사하다 하여 금융리스라고 한 것이다. 이에 비하여 후자는 레서가 레시에게 對象物品을 식별한 리스료를 받고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넷째, 國際팩토링契約(international factoring agreement)이란 무신용장방식의 무역거래를 할 때, 매도인(supplier)이

35) 朴煥日, 前掲書, p.265; 崔竣塔, 前掲書, p.65.

(i) 매수인(customer)과 체결한 物品賣買契約으로 인한 賣出債權을 팩터(factor)에게 讓渡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대하여 팩터는 (ii) 일정한 금융서비스³⁶⁾의 제공을 약속함과 동시에 賣出債權의 讓渡通知를 하기로 합의하는 계약을 말한다(팩토링 협약 제1조 2항). 국제팩토링거래는 금융기관이 수출상의 賣買代金債權을 매입함으로써 조기에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하며, 또 수입상에 대하여는 신용장의 개설 없이 외상으로 수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擔保力이 약한 기업이 수입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貿易金融의 한 형태이다.

V. 結 言

지금까지 國際通商法の의 意義와 體系, 그리고 통상법으로서의 國際經濟法 및 國際商事法の 研究方向에 관하여 그 동안의 각 분야별 선행연구자료를 토대로 논자의 意見을 제시해 보았다. 그 동안 國際通商法과 그 유사법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거의 시대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國際通商法の의 구체적인 研究範圍와 對象에 대하여는 아직 學者 또는 국가에 따라 일치하지 아니한 부분이 많이 있으며, 앞으로도 각국의 정책적인 입장과 학자들의 見解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의 시각차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들어 새로이 사용되고 있는 國際通商이라는 말 자체는 바로 國際貿易의 전반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國際通商法도 의미상으로는 國際貿易法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이다.

불론 국제통상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보면 國際經濟關係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國際通商法도 국제경제법의 下位概念으로 두어야 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國際通商이란 경제학적인 이론분석과 정책수립뿐만 아니라 그 실천적인 과제인 貿易商務의 분야도 그 이상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36) 여기서 “일정한 금융서비스”란 팩터가 (i) 공급자(매도인)에 대한 대출 또는 선대를 포함한 금융의 제공, (ii) 매출채권에 관한 세정의 관리, (iii) 매출채권의 추심, (iv) 채무자(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의 보호 등의 기능 중에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을 수행할 경우를 말한다(팩토링 협약 제1조 2항 b호).

고 있기 때문에, 항간에서 國際通商法을 마치 국제경제법과 同·視하려 하거나 또는 그 下位概念으로 두고자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誤解이며, 이는 하나의 偏見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분명 國際通商法은 그 주체와 규율대상, 그리고 연구범위가 인접분야의 다른 實定法과 구별되는 獨自性을 지니고 있다.

앞서 논한 바와 같이 國際通商法을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정부간 또는 정부와 개인간이나 또는 개인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자본과 노동, 기술투자 및 기타 지적재산권의 이전 등에 관련하여 규율하는 모든 國際公法 내지는 國際私法”이라고 정의할 때, 國際通商法의 연구범위도 각국의 교역증진을 위한 국제경제관계 등을 규율하는 國際經濟法에서부터 무역기업의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貿易關聯契約과 상사분쟁의 해결 등을 규율하는 國際商事法까지를 포괄하여야 함은 자명하다. 따라서 國際通商法의 研究對象은 국제통상을 수행해 나가는 主體일 수도 있고, 이러한 통상거래의 대상물인 客體일 수도 있다. 예컨대 WTO와 같은 國際機構, 國家나 政府, 企業이나 個人 등 통상주체를 규율하는 규범, 또는 商品과 서비스, 資本과 勞動과 같은 객체의 수출입 또는 이에 따른 國際收支나 환율의 변동 등이 國際通商法의 研究對象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 국제거래가 物品賣買뿐만 아니라, 서비스·자본 또는 기술의 이전을 수반하는 産業設備輸出, 특허·상표·노하우 등 知的財産權의 국제라이선싱, 合作投資, 海外建設工事, 海外資源開發, 海外借款, 販賣代理店開設, 國際M&A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國際通商法의 연구범위도 기존의 물품매매만을 전제할 것이 아니라, 날로 복잡·다기해지는 국제거래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參考文獻]

- 高瀆煥, 國際去來法論, 經進社, 1987.
- 金容日·朴承基, UR 最終協定解說, 韓國貿易經濟, 1994. 1.
- 朴鍾秀, 國際通商關係論, 도서출판 두남, 1995.
- 朴煥日, 國際去來法, 韓國經營法務研究所, 1995.
- 徐正斗, 國際通商法, 三英社, 1996.
- 徐憲濟, 國際經濟法, 栗谷出版社, 1996.
- 梁映煥·徐正斗, 國際貿易法規: 賣買·決濟·運送·保險·仲裁, 三英社, 1994.
- 李相敏, 國際去來法, 中央大學校 出版部, 1992.
- 李相潤, 國際經濟法, 中央經濟社, 1995.
- 李泰熙, 國際契約法, 學研社, 1985.
- 張孝相, 國際經濟法, 博英社, 1985.
- 崔竣鎔, 國際去來法, 三英社, 1996.
- 韓國貿易協會 國際貿易研修院, 國際通商法, 1995. 9.
- 丹宗曉信·山手治之·小原喜雄, 新版 國際經濟法, 青林書院, 1993.
- 山田鎌一·佐野 寬, 國際取引法, 有斐閣, 1992.
- 田中信幸, 國際取引法, 商事法務研究會, 1994.
- 松下滿雄, 國際經濟法, 有斐閣, 1991.
- 佐藤和男 譯, 國際經濟法の基本問題, 嵯峨野書院, 1989.
- Chalmers, M.D., The Sale of Goods Act 1893, London, 1920.
- Day, D.M.,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2nd ed., Butterworths, 1993.
- Domke, Martin, Domke on Commercial Arbitration, Revised Edition by Gabriel M. Wilner, Illinois, 1990.
- Folsom, Ralph H., Gordon, Michael W. and Spanogle, John A.,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3rd ed., West Publishing Co., 1995.
- Guest, A.G., Benjamin's Sale of Goods, 3rd ed., London, 1987.
- Honnold, John O.,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Netherlands, 1991.
- Houtte, Hans Van,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Sweet & Maxwell,

1995.

ICC, Guide to Incoterms 1990, Publication No. 461/90, 1991.

—, Rules of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Publication No. 447, 1987.

—, 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Publication No. 522, 1995.

Ivamy, E.R.H.,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13th ed., London, 1989.

Jackson, John H. and Davey, William J., Legal Problems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West Publishing Co., 1986.

Mustill, Michael J. and Gilman, J.C.B., Arnould's Law of Marine Insurance and Average, 16th ed., London, 1981.

Seidi-Hohenveldern, Ignaz, International Economic Law,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9.